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6.

발 의 자 : 김선교·김위상·구자근
김성원·김상훈·안철수
정동만·이양수·송석준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,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(이하 “신지식농업인”이라 함)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,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·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·기술·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

설).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신지식농업인의 지원·육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·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활동을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지식농업인”이라 한다)를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의 선발·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신지식농업인의 지원 · 육성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 · 무형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활동을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지식농업인”이라 한다)를 지원 ·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의 선발 ·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